

# 구정질문 및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목록



2004. 2.

**도시관리과**

## 구정질문 검토 및 처리결과 목록

【도시관리과】

구분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95회 임시회	이용주	1.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의 개요 및 구의회 사전협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형 뉴타운 개발사업은 영등포동2,5,7가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영등포중앙시장 등 기존 재래시장은 용도지역변경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사업은 신길동 일대 와 동일 생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정되면 시비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임</li> <li>·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영등포동, 문래동 일대를 지정대상지로 계획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방세 감면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중심지로 개발될것입니다.</li> <li>· 구의회와 사전협의 여부에 대하여 위지구 사업시행계획을 2003.1.26일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3.2.20일 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여 보고하였으며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사업지구는 2003.11.18. 지구지정되어 현재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이며,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 사업은 2003년도에 결정되지 않았으나 자치구 예산으로 뉴타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2004년도 뉴타운 우선사업 시행지구 지정을 요청할 예정임.</li> </ul>	진행중

구분	질문 의원	질문 내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95회 임시회	이용주	2. 양평권역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p>· 우리구에서는 양평역 일대를 순환재개발 사업을 통한 정비방안을 추진코자 기존 주택 부분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인접 공장등으로 확대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 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재개발 대상지는 준공업 지역으로 「서울시 준공업 지역내 공장 이적지 심의기준」 상 「공업기능 우세지구」 이므로 공동 주택 불허지역이나 환경정비를 위하여 완화 적용을 요청하고 순환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 후보지를 재개발 기본계획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양평동 지역에 대해 우리구 의견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열람공고(서울시)하였고 2004년 3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p>	진행중
		3. 올림픽대로 미관지구의 변경가능 여부	도시관리과	<p>· 올림픽대로 미관지구는 한강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석으로 부터 12m까지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하여 올림픽대로,한강등의 경관을 유지하도록 건축행위시 대지경계로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토록하고 4층이하로 규제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p>	조치 완료

구분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95회 임시회	이용주	4. 지하철9호선 건설 변경내용 및 사유	도시관리과	· 구간은 강서구 개화동에서 강남구 반포동 일대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2002.1.5.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관내 정거장은 912,913,915,916 및 2002.12.27 결정된 여의도 구간의 914 정거장 5개소입니다. 이중 양평동 912정거장은 양평정거장 규모 축소 및 환기구 위치조정에 따른 규모 변경 등으로 2004. 2.13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하였음.	조 치 완 료
제96회 정례회	류병하	1.영등포구 권역별 개발 구상과 관련 장·단기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 우리구는 서남생활권역의 중심지이자 광역 교통 요충지로서 영세공장 및 재래시장등 도심 부적격시설과 기성 시가지의 열악한 여건을 해결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개발전략을 수립하여 도시 문제를 분석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상업, 공업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반을 구축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조 치 완 료

구분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96회 정례회	신길철	1. (구)남부지원 이전후 후속대책 및 취약지역의 향후대책	도시관리과	· 남부지원 부지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소유로 문래동2가,4가 일대의 영세 금속공장의 공장재개발 사업을 위한 순환용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문래동 2가,4가를 우리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공장재개발을 시행하고자 2003.5.14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결정되지 않아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에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요청할 계획임.	진행중
제97회 임시회	배기한	1.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 우리구는 신길로 및 도신로변은 제2종(12층)으로 2003.9.8. 신길로 및 도신로 등 가로변 필지의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의 결정을 보류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신길로 및 도신로 등 간선도로변 인접블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간선도로변의 가로기능에 적합한 건축물 입지, 공공공지 조성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세분된 종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임으로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 으로 협의 예정임.	진행중

구분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98회임사회	김동철	1.서울시“남부도로관리사업소”이전에 따른 문제점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2003. 12. 10. 청사 이전건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 적정 이전부지를 물색토록 지시 받아 이에 따라 2004. 1. 9.서울시 재무과 및 관할 6개구에 공용청사 이전부지 선정 요청 공문을 발송 이전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li> <li>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이전을 추진 할 계획임.</li> </ul>	조치 완료
	신길철	1.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용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구에서는 영등포 부도심권역을 우리구 균형발전촉진 지구 대상으로 계획하여 2003.5.11.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나 지정 되지 않아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 예정임.</li> </ul>	진행중

구분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98회임사회	배기한	1. 뉴타운 지정 불발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에서는 신길동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친환경적인 신시가지 조성하고자 2003년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2004년도 서울시 뉴타운사업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한바 있고</li> <li>· 현재는 뉴타운사업 우선사업시행지구 선정 요청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li> </ul>	진행중
		2. 도시계획 세분화 미흡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한후 서울시 및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 계획안을 수립하였음</li> <li>· 이러한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 우리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3.4%로 계획되었으나, 계획수립시 29.2%로 상향계획하여 입안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에 개발 예정지역등 면적 375,530㎡가 제3종 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요청한 계획안보다 5.5%로 감소 확정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3.7%로 수정 가결되었으나, 향후 지역여건등 기반시설 확보 여부등을 검토하여 다시 조정할수 있음</li> </ul>	진행중

구분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101회정례회	김동철	1.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이 종합적인 계획없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구 개발계획이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림동 지역 특목교 유치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까지 수립 완료할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에 기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계획과 주변 도시개발등을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예정이고</li> <li>· 뉴타운 지정에 따른 대림동 지역의 특목교 유치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고 그 위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장기 검토중이며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시 대림동 신길동 권역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기본계획은 2004. 2.17.(주)제일엔지니어링으로 용역사가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li> </ul>	진행중



구분	질문 의원	질문 내용	소관부서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비고
제101회정례회	배기한	1. 신길2-1 주거환경개선지구 환지 확정 지연으로 주민피해	도시관리과	· 조속한 환지확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으로 담장 등을 철거할 예정으로서 이를 위한 절차로 도로 저촉부분에 대한 현황 측량은 현재 지적공사에 의뢰한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건물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실시한 후 2004.6. ~ 7.경 공사시행할 예 정임.	조치 완료
		2. 신길2-3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 미흡	도시관리과	· 주민이 요구하는 지구내 주진입로는 6m, 나머지는 4m인 계획안대로 2003.12.18.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2003.12.29. 개선계획 수립 고시 하였음.	조치 완료
		3. 조사특위 지적사항(신길2-1주거환 경개선지구 환지확정) 불이행 문제 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 조속한 환지확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으로 담장 등을 철거할 예정으로서 이를 위한 절차로 도로 저촉부분에 대한 현황 측량은 현재 지적공사에 의뢰한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건물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실시한 후 2004.6. ~ 7.경 공사시행할 예 정임.	조치 완료
		4. 준공업지역내 10,000㎡ 이상의 공 장이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 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토록 한 구청 장 방침사항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요망	도시관리과	· 구 정책회의(2004. 2.13)에서 구청장 방침 폐지 결정 · 구청장 방침 변경 예정	진행중

##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대장

제출자 : 도시관리과장 한 만 구(인)

처리 번호	제목	지적사항및건의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 고
행정- 26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소환	. 조정 : 1,076,941천원 . 징수 : 535,302천원 . 체납 : 541,639천원 . 징수율 : 49.71%	0.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해야 할 것이며 0. 공무원이 개별방문 면담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임	도 시 관리과	0. 체납분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예고 후 소유 재산을 파악하여 2월 23일 압류 실시 - 전국토지조회실시(03.11.20) - 2003상반기 체납고지서 발송(03.12.22) - 2003.11월 체납분 체납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 발송(03.12.18) - 2003.12월 체납분 체납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 발송(2004.1.16) 0. 세입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동 담당자별로 방문하여 체납독려 및 징수 - 세외수입특별징수대책수립(03.11.27) 하여 동 담당자별로 방문 징수 독려 실시	조치완료

835

처리 번호	제목	지적사항및건의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 고
사회 건설- 8	주택재개발 사업 시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년 업무보고시 주택재개발구역 도림제1-1 구역이 2003년 업무보고 시에는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2년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 추진되었던 도림제1-1주택재개발구역이 2003년 소수 주민의 반대 여론에 의해 폐지되는 것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한 행정으로 즉각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li> <li>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후임자는 이와 같이 지역주민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의 변경을 검토할 경우에는 최초의 추진배경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조치할 것</li> </ul>	도 시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림1동 30번지 일대는 총건물동수 546동중 2000년도에 424명이 재개발사업 추진요청, 동년에 196명이 추진반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2003년 1월에는 331명이 재개발사업 추진 반대 민원이 제기된 바,</li> <li>주민의 재개발사업 추진반대 의견이 상당수인 지역으로서 주민의 의견 합의가 절대 필요하여 주택재개발 추진 주민대표에게 주민 찬반의견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재개발 추진 찬성에 관한 합의된 의견이 없는 관계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반영요청이 어려운 사항으로서 서울시에 2003년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요청시 제외된 사항임.</li> <li>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검토주기가 5년인 바, 향후 2008년에 주민합의에 의하여 반영여부 검토하여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요청</li> </ul>	조치완료

처리 번호	제목	지적사항및건의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 고
사회 건설- 11	관공서 위법 건축물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촬영에 의하여 영등포 관내 관공서에 160여건의 위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판독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공서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것</li> </ul>	도 시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공서 위법건축물은 현재까지 공공으로 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신고나 허가를 득하도록 적법 절차를 안내할 것이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할 것임</li> </ul>	조치완료

처리 번호	제목	지적사항및건의사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부서	조치결과	비 고
사회 건설- 36	위법 건축물 시정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의도동 45-3,5호의 위법건축물 발생을 파악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시정지시가 안되고 있음</li> <li>- 여의도동 45-3(건축주 : 여의도 종합스포츠크 센터)</li> <li>· 용도 : 재활용창고, 구조 : 합판/합판, 면적 : 3.6㎡</li> <li>· 용도 : 송풍기 보호시설 구조 : 철판/철판, 면적 : 7.5㎡</li> <li>- 여의도동 45-5(건축주 : 유춘래)</li> <li>· 용도 : 재활용창고, 구조 : 합판/합판, 면적 : 4.0㎡</li> </ul>	○ 상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여의도동 일대의 위법건축물 적발에 철저를 기할 것	도 시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의도동 45-3 재활용 창고와 여의도동 45-5 재활용 창고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건축주에게 자진시정(철거)토록 공문 발송 조치하였으며, 건축주가 자진철거 치 않을 경우 강제철거 예정임.</li> <li>○ 여의도동 45-3 송풍기 보호시설은 비건 물로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li> </ul>	조치완료